

규제심사대상 확인

접수번호 : 3702호

제 목 : 도시부소형차전용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제정

위의 도시부소형차전용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제정을
(를)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
상이 없음을 확인함.

2018. 11. 08.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

